

“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!”



수신자 : 수신처 참조

(경 유)

제 목 :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

1. 귀 기관(교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이수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아래 기준에 따라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**가.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 관련 [별표1])**

- 1) 실습기관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·시설, 기관 및 단체
- 2) 실습지도자 - 사회복지사 **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**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또는 사회복지사 **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** 복지사업 실무경험자
- 3) 실습시간 : **120시간 이상**  
※ 주의 : 상기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미충족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함

**나. 적용시기**

- 1) 전문대학·대학교·대학원 재학생 :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
- 2) 학점은행제(시간제등록·평생교육원) 이수자  
: 201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

**다. 유의사항**

- 최근 들어 허위 현장실습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, 자격증 신청시 허위로 의심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협회는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실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내실 있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위해 실습생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참고 : 현장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(<http://lic.welfare.net>)에 공지된 「사회복지현장실습 실태조사 및 지침서(2010)」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**한국사회복지사업회장**



수신처 : 전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, 사회복지(관련)학과 및 교육기관 22,000여곳

담당자 박유림      과장 김경화      차장 신용석      사무총장 원명순      회장 직무대행 이영분  
협조자  
시행 한사협-2011-공문발송-00059 (2011.02.17)      접수 ( . . )  
우 140-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-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/홈페이지 : <http://welfare.net>  
전화 02)786-0845 / 전송 02)786-6524 / 이메일 p118y1@welfare.net /공개